

開發制限區域 解除 및 주민生活與件改善에 관한 請願

審查報告

1992. 4. 13.

建設委員會

1. 請願 日字 및 請願者 : 1992년 3월 4일

清州市 地東洞 高澈遠外 683人

2. 審查 日字 : 1992年 4月 9日 第 77回 忠清北道議會 臨時會
第 1 次 建設委員會

3. 紹介 議員 및 出席 公務員

紹介 議員 : 朴 晚淳 議員

出席 公務員 : 都市開發課長 金 鐘雲

4. 請願의 要旨

1) 清州市 地東洞 一帶의 開發制限區域은 都市計劃法 第 21 條에 依據 都市의 無秩序

한 擴散을 防止하고 都市 周邊의 自然 環境을 確保하기 위하여 1974, 2, 6 地籍告示後 指定한바 있는 地域으로서 都市計劃法 第 21 條 第 2 項 同法 施行令 第 20 條 및 同施行規則에 의하여 各種의 規制를 받는 地域으로 開發制限區域 解除 要求.

- 2) 따라서 同 地域은 다른 一般地域에 比하여 土地의 去來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므로 地價가 形成되지 않고 相對的 으로 地價의 下落과 隔差가 極甚한 實情으로 그 對策 要求.
- 3) 또한 開發制限區域에 編入된 土地를 擔保로 하여 金融機關의 資金을 融資 받고자 하나 擔保取得財產으로 認定하지 않으므로 擔保權이 없는 實情으로 그 對策 要求.
- 4) 建築物의 新,增築의 境遇에도 開發制限區域 管理規程에 의한 規制事項이 嚴格하여 一般建築法의 適用을 받는 自然綠地에 比하여相當한 不利益을 당하고 있는 實情으로 規制 緩和 要求.
- 5) 開發制限區域은 土地利用에 制約를 받고 各種 不利益을 받고 있으므로 特別 补償次元에서 이 地域에서 生産되는 農產物 全量 収買를 要求하고 있음.
- 6) 無煉炭 貯炭場 및 시멘트 싸이로에서 發生되는 粉塵 公害로 農作物 被害와 大氣污染 等의 對策을 要求 하고 있음.

5. 專門 委員 檢討 報告 要旨

첫째, 開發制限區域의 解除는 都市計劃法 第 21 條의 規程에 의하여 指定한 事項으로
法律을 改正하여야 解除가 可能한 本議會의 權限外의 法的 事項으로서 採擇이
不可能 하다고 思料됨.

둘째, 地價 下落 防止對策에 대하여는 各種規制로 인하여 一般地域에 比해 去來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 事實이나 本議會로서 處理 할 수 있는 事項이
아니므로 採擇 할 수 없는 것임.

셋째, 金融機關의 擔保力喪失에 대하여는 開發制限區域 内의 土地에 대한 擔保 取得
財產의 換價性이 없기 때문에 金融機關의 貸出 規程에 의하여 擔保 取得을 하
지 않고 있으므로 金融機關 内部 規定에 關한 事項으로 本議會에서 處理가 不
可能하여 採擇 할 수 없음.

넷째, 開發制限區域內의 建築物의 新增築 및 既存 家屋 任意 變更時 規制緩和 要求에
대하여는 開發制限區域 内의 建築物의 新增築 既存家屋에 대한 變更等은 都
市計劃法 第 21 條 第 2 項 및 同法 施行令 第 20 條, 同法 施行規則에 의한
規制事項으로 本議會에서 處理 할 事項이 아니므로 採擇 할 수 없음.

다섯째, 開發制限區域 内에서 生產된 農產物 全量 収買에 대하여는 一般農產物의 全

量收買는 할 수 없을 것으로 料 되나 道知事의 權限 事項인 秋穀收買 物量
의 地域別 配定時 特別配定에 參考 하도록 採擇함이 可함.

여섯째, 無煉炭 貯炭場等 公害 誘發 業體 解決에 대하여는 清州驛 移轉과 함께 都市
計劃法 第 7 條 第 12 項 6 號 바 項 (1980, 5, 29. 部令 第 264 號) 에
依據 清州市內의 既存 煉炭 工場을 移轉하기 위하여 設置한 施設로서 移轉
등은 部令을 改正하는 事項으로 採擇 할 수 없으나 粉塵公害에 대하여는 既
忠清北道 保健環境 研究院에 測定 依賴한 結果 基準值에 未達하고 있으나 繼
續的인 指導團束이 要求된다고 料되어 採擇함이 可함.

6. 質疑 및 答辯 要旨

◦ 尹泰漢 委員 質疑

- 1) 地域經濟局에서 實施하고 있는 道界 奧地마을 開發事業과 같은 事業을 特殊施策
事業으로 策定하여 開發制限區域에 施行할 意向은 ?
- 2) 住宅課에서 實施하고 있는 農村住宅改良事業을 開發制限區域內 住宅改良 要請
農家부터 優先 支援 檢討 意向은 ?
- 3) 聚落構造改善事業을 開發制限區域內의 聚落에 他地域보다 優先하여 計劃推進
할 意向은 ?

이는 書面 答辯 要求 한바, 執行部로부터 次期 臨時會 까지 答辯토록 하였음.

7. 討 論 要 旨

없 음

8. 審 查 結 果

'開發制限區域 解除要求', '開發制限區域地價下落防止策要求', '金融機關擔保力喪失에 대한 對策要求', '既存 家屋 新增築時 任意變更 規制 緩和 等의 請願事項은 本議會의 權限外의 法律 改正 事項으로 採擇하지 않기로 하고 '地域內生產되는 農產物 全量 収買', '無煉炭 저탄장公害 誘發業體 解決' 請願事項等은 秋穀收買 物量 配定期 參考 및 公害 誘發業體 指導 團束을 強化하도록採擇하여 本會議에 부의하기로 在籍議員 9人 滿場一致로 可決.

9. 其他 必要한 事項

없 음

10. 少數 意見의 要旨

없 음

11. 意見書

- 가. 開發制限區域 内에서 生產된 農產物 全量 収買에 대하여는 一般農產物의 全量
收買는 할 수 없을 것으로 思料되나 秋穀收買 物量의 地域別 配定時 特別配定
에 參考 하도록 함이 可함.
- 나. 無煉炭 貯炭場等 公害 誘發 業體 解決에 대하여는 清州驛 移轉과 함께 都市
計劃法 第 7 條 第 12 項 6 號 바 項 (1980, 5, 29. 部令 第 264 號) 에
依據 清州市內의 既存 煉炭 工場을 移轉하기 위하여 設置한 施設로서 移轉
等은 部令을 改正하는 事項으로 不可能 하니 粉塵公害에 대하여는 繼續的
인 指導 團束이 要求됨.